

#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(이동식)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

## 1 사업개요

-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사물인터넷(IoT) 기반의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\*을 설치하여 화재,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
\* 인화성가스·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,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,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·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

## 2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中

☞ 건설업 등록중* 보유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업체
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의 전문건설업(①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, ②기계설비·가스공사업, ③가스·난방공사업, ④시설물유지관리업) 등록중
☞ 건설업 등록중 보유업체로서 화재·폭발 위험장소(인화성가스·액체 취급·저장설비 보유 사업장) 내 정비·보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출입*하여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화재위험작업 수행 업체
* 작업 대상 사업장에서 발급한 작업 관련 확인서(관련 증빙자료, 1년 이내 발급분)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

※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제외

- (지원금액) 사업주 당 **최대 3,000만원**(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%) 지원
- (성능기준)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

구분	최소 성능기준
수신반 (모니터링 설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스마트폰 등 이동장치를 통해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</li><li>-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으로 경보</li><li>- 확장 유닛(다채널)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</li><li>- 긴급차단장치 및 HMI시스템 등 가스 확산 방지, 시스템 통제 기능을 위한 구성품 추가(옵션) 가능</li><li>- 방수방진등급: IP65 이상</li></ul>
가스감지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가스감지기 등은 설치·사용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품 일체 방폭인증(KCs) 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</li></ul>
경보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위험,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(경보음) 필수</li><li>- 방수방진등급: IP65 이상 ※ 수신반내 탑재가능</li></ul>